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30 발의연월일: 2021. 2. 4.

발 의 자: 민홍철·강민정·김병주

김정호・송영길・송옥주

이형석 · 임종성 · 진선미

김병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9조 양심의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개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이 시행되었음.

현행 병역법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대체역 편입절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정지하는 규정은 없어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도 대체복무요원 소집은 계속 해야 하는 실정임.

또한, 예비군의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15조에서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거나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예비군대체복무의 경우 복무 중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예비군대체복무자의 복무부실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대체역의 편입절차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요원의 소집까지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예비군대체복무자도 예비군과 동일하게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제83조제1항제7호의2 및 제9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7호의2 중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를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정지"로 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 3. 복무 중 조직적인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아 제83조(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 제83조(전시특례) ① ----은 전시 · 사변이나 동원령이 선 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 한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7의2.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 역 편입절차의 정지 및 대체 역 편입절차의 정지 복무요원 소집의 정지 8. • 9. (생략) 8. • 9.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를 위 <신 설> 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 개월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 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 탈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 3. 복무 중 조직적인 정치운동 <u>에 관여한 경우</u>
- 4.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